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59회 제2차 정례회

검토보고서

2022. 11. 28. (월)

순서	검 토 안 건	제 안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청장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Tö'ö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준상)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유준상)

1. 제안경위

O 제안자 : 마포구청장

O 제안일 : 2022. 11. 15.

O 회부일: 2022. 11. 18. (의안번호: 22 - 121)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제3항에 따라 마포구 옴부즈만을 공개모집·선정하고, 마포구의회에 위촉 동의 절차를 거치고자 하는 것임.

3. 옴부즈만 선정자(위촉 동의 대상자)

(가나다 순)

연번	성명(성별)	연령	주요경력 등
1	임용호 (남)	69세	・서울시 공익감사단・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민생호민관・前 국회사무처 보좌관(4급 상당)
2	조광현 (남)	61세	· 행정사· 前 마포구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前 마포구 법무팀장, 민원소통팀장
3	황성호 (남)	55세	・ 건축사・ 한강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前 마포구 건축위원회 위원

4. 관계법령

O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옴부즈만 구성 등)

5. 검토의견

- 동 위촉 동의안은 2014. 4. 24. 제정된「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법·부 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 3명을 위촉하고 마포구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 2022. 10. 14. ~ 10. 28.까지 마포구 옴부즈만을 공개모집한 결과 7명이 지원하여 2022. 11.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서류심사 결과 3명의 옴부즈만이 선정되었으며 선정과정상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옴부즈만 위촉에 대해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한 취지는 자치 단체장의 임의적·편파적인 옴부즈만 선정을 예방하고 보다 공정 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위촉함으로써 행정권의 남용이나 부당행위 로 구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객관적 판단을 하여 행 정절차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것이므로 전문성을 고려

한 옴부즈만 선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2기 옴부즈만이 4년여 동안 500여 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시정권고, 의견표명, 조정, 각하, 소송취하 등 한정적 시간에 많은 성과를 이루었음을 감안할 때,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나 축척된 경험 등이 누락없이 인수인계 될 수 있도록 하여 3기 옴부즈만 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소관부서에서는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별표 1]

옴부즈만 제도의 근원

[~制度,ombudsmansystem]

요약 스웨덴 등 북유럽에서 1808년 이후 발전된 행정통제 제도로, 민원조사관인 옴부즈만의 활동에 의해 행정부를 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옴부즈만은 잘못된 행정에 대해 관련 공무원의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 민원인에게 결과를 알려 주며, 언론을 통해 공표하는 등의 활동을 한다.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옴부즈만은 독립적 조사권, 시찰권, 소추권 등을 가지나, 소추권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옴부즈만 제도의 유형은 옴부즈만을 누가 선출해 임명하는가에 따라, 국회에서 선출하는 북구형의 의회 옴부즈만과 행정수반이 임명하는 행정부형 옴부즈만으로 구분된다.

행정권의 남용이나 부당행위로 국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그것을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제도화한 행정통제의 수단. 옴부즈만 제도란 행정이 법에 따라 잘 수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행정관료들의 직권남용으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당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지 등을 의회에서 임명된 요원으로하여금 조사하고 감찰하게 하는 일종의 행정감찰 제도(行政監察制度)를 말하며, 그 직책을 담당하는 사람을 옴부즈만(ombudsman)이라 부른다. 옴부즈만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호민관(citizendefender) 또는 행정감찰관이라 말할 수 있다.

옴부즈만은 1809년 스웨덴에서 처음으로 헌법에 채택된 이래 주로 북유럽에서 <u>발전</u>해 온 제도이다. 그 후 여러 나라에 보급되어 지금은 영국·이스라엘·뉴질랜드 등의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그 밖의 많은 나라에서도 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이러한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으며, 그 기능과 유사한 제도라 할 수 있는 것을 든다면, <u>감사원</u>, <u>대통령실</u>의 특별감찰반, <u>국무총리</u>실의 공직윤리 지원관, <u>국민권익위원회</u> 고충처리국 등의 제도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분산된 제도로 과연 옴부즈만과 같은 취지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옴부즈만 제도는 이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 그 특징을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여기서는 스웨덴과 핀란드에서 활용하고 있는 제도를 중심으로 그 특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옴부즈만은 입법부에 소속된 기관이다.[그러나 프랑스의 경우에는 내각의 결정에 따라 <u>대통령</u>이 임명한다]

둘째, 옴부즈만은 정치적으로 독립된 기관이며, 동시에 중립성이 보장된 조사기관이다.

셋째, 조사는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職權)에 의해서 한다.

넷째, 옴부즈만은 비위자(非違者)를 처벌하는 <u>권한</u>을 가지나, <u>행정기관</u>이나 법원의 결정이나 행위를 무효 또는 취소, 변경할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다.